

[별표 3]<신설 1999.6.30>

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(제34조제3항관련)

| 위 반 행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 거 법 령      | 과태료 금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
| 1.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             | 법 제48조제1항제1호 | 300만원  |
| 2.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8조제1항제2호 | 250만원  |
| 3.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등               | 법 제48조제1항제3호 | 300만원  |
| 4.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가스용품제조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8조제1항제4호 | 300만원  |
| 5.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등               | 법 제48조제1항제5호 | 300만원  |
| 6.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8조제1항제6호 | 300만원  |
| 7.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8조제1항제7호 | 300만원  |
| 8.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·사업자등·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    | 법 제48조제1항제8호 | 300만원  |
| 9.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·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 | 법 제48조제2항제1호 | 200만원  |
| 10.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기록을 작성·보존하지 아니한 자   | 법 제48조제2항제2호 | 200만원  |
| 11.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공급방법에 위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| 법 제48조제2항제3호 | 200만원  |
| 12.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사용자 | 법 제48조제2항제4호 | 200만원  |
| 13.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        | 법 제48조제2항제5호 | 200만원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
| 14.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등·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             | 법 제48조제2항제6호 | 200만원 |
| 15.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등·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             | 법 제48조제2항제7호 | 200만원 |
| 16.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단체·사업자등·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| 법 제48조제2항제8호 | 200만원 |
| 17.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고 발생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               | 법 제48조제2항제9호 | 150만원 |
| 18.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사용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48조제3항    | 100만원 |